

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에 따른 공고

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86-3번지 일원 양지7지구 3단지 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승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【 주택조합 변경인가 내역 】

조 합 명	양지7지구 3단지 지역주택조합	대표자	최○○
사무 소재지	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864, 303호		
변경인가 승인일	2026. 7. 30.		
건설예정지	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86-3번지 일원 (양지7지구 A-3BL)		
조합원수	기존 : 939명 → 변경 : 806명 [제명 133명]		
대지면적	47,043 m ²		
토지확보 현 황	토지소유권 : 98.75% / 국공유지 0.47%		

2026. 7. 30.

남 양 주 시 장